

## 붙임 3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

### 1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

#### ○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

| 구분    | 토플(TOEFL) |     | 토익<br>(TOEIC) | 텡스(TEPS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지텔프<br>(G-TELP) | 플렉스<br>(FLEX) |
|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 | PBT       | IBT |               | 2018.5.12.<br>전 시험 | 2018.5.12.<br>이후 시험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일반    | 530       | 71  | 700           | 625                | 340                 | 65(level 2)     | 625           |
| 청각장애인 | 352       | -   | 350           | 375                | 204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375           |

-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**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**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
-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TOEFL, TOEIC, TEPS, G-TELP)의 경우에는 **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 사전등록해야 함** (단, 플렉스(FLEX)는 성적유효 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기에 사전등록 불요)
  - 토익, 텡스, 지텔프 :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
  - 토플 :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~10일 등록
- ※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
- ※ 사전등록일 기준으로 각 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험성적만 등록가능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- 외국에서 응시한 TOEFL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함
-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(P.2 참고)

## 2

##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 범위

## 1. 영어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

-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
※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

- ① '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'인 사람
- ② '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(말소리) 분별력 50% 이하'인 사람(진단서 반드시 제출)

☞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(舊2·3급으로,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)

☞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
<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>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

## 2. 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

- 7급 영어 기준점수

| 시험명       | TOEFL(PBT) | TOEIC | TEPS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FLEX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'18.5.12. 이전시험 | '18.5.12. 이후시험 |      |
| 7급 공개경쟁임용 | 352        | 350   | 375            | 204            | 375  |

### 3. 제출서류 등 안내

#### ① (제출서류) 의사진단서\*(의사 소견서 불인정)

\*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

#### ② (발급기관)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가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

#### ③ (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)

(가)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①

(나)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②

\* 장애정도 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7호)에 따라 검사

(다)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③

#### <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>

상기인은

-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(말소리)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,
- ②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, 어음(말소리)분별력이 30%인 사람으로서
-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.

### 4.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

#### ① (신청·제출 : 응시자 → 경기도)

-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\*하고,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를 별도 안내하는 기한까지 우편(등기)로 제출

※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(舊2·3급)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

\* 예 : ☑(체크)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

※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( 제출 주소는 원서접수 화면에서 별도 안내 예정 )

② (대상 확인 : 경기도 → 응시자)

-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,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자료 보완 요청 등 추가 안내 예정

③ (인정기간)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시험에 한함

-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(신청)하되, 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

5. 유의사항 등 안내

-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,
- 의사 진단서 등을 위·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.

### 3

##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

- 기준점수(등급):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
- 인정범위
  -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**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**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
  -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
- 성적등록 및 확인방법
  -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일자·인증번호·인증등급 등 입력
    - ※ 필요 시 진위확인을 위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
  -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에 **사전등록 불필요**